
서체와 폰트파일의 저작권 보호체계 재고를 위한 현실적 토대

류 시 원*

논문

목 차

I. 서론

II. 해외의 서체 관련 권리 보호 현황

1. 일반 현황
2. 주요 국가의 보호체계

III. 서체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한 국내 법제 및 판례

1.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2. 폰트파일의 저작물성을 긍정한 판례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IV. 비판적 검토의 전제 - 종래의 논의 및 판례에 대한 재평가

1. 종래의 논의에 대한 검토
2. 판례상 서체도안과 폰트파일의 관계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투고일자 : 2019년 02월 01일 / 심사일자 : 2019년 02월 27일 / 게재확정일자 : 2019년 03월 04일

V. 법제도 측면의 검토

1. 응용미술저작물 보호제도의 도입
2.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글자체 보호

VI. 기술 및 산업 현실 측면의 검토

1. 폰트파일의 특수성
2. 폰트 제작 현실의 변화
3. 기술의 발전과 시장상황의 변화에 내포된 법경제적 함의
4. 소결

VII. 결론 및 전망

초 록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선고된 일련의 판결을 통해 우리 대법원은 ‘서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대법원의 입장은 큰 도전을 받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법제도와 기술적·산업적 변화에 비추어 서체와 폰트파일의 저작권 보호 차등을 선언한 대법원의 견해가 현실점에서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000년 법 개정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구법상의 응용미술작품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서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던 대법원 관례의 존립 근거가 상실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폰트파일과 관련된 기술 및 산업현실의 변화는, 한편으로 서체 보호 부정론의 논거를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폰트파일의 보호만으로는 미흡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디지털 서체가 다양화된 현실에서 서체의 독점은 더 이상 문자의 독점과 동일시될 수 없고, 서체 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서체의 장식적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서체의 기능을 단편적으로 파악했던 과거 대법원의 관점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서체와 폰트파일의 저작권 보호 차등에 관한 논의가 재개될 현실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은 서체의 저작권 보호가능성을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 정의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폰트파일의 창작성 인정근거를 서체의 도안을 포함한 폰트파일 제작의 전체 과정에서 찾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주 제 어

서체, 글자체, 타이프페이스, 폰트, 폰트파일, 디지털 폰트,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저작물성

I. 서론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오늘날만큼 문자의 중요성이 강조된 적이 없다. 우리가 문자를 매개로 축적·전파되는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각별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정보 전달 통로가 온라인으로 확장되면서 문자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갖가지 방법으로 사상적 교류에 기여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문자가 가진 지식 전달과 정보 확산의 실용적·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 대법원은 일찍이 한 벌로 구성된 문자의 모양과 맵시, 즉 서체¹⁾ 자체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언한 바 있다.²⁾ 반면 서체가 컴퓨터상에서 처리되는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표현된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³⁾ 대법원이 이러한 견해를 표명한 뒤로 약 20년의 시간이 지났다.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학계에서 서체와 폰트파일의 차등적 보호의 정당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이후 현업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많지 않았기에 논의는 지속될 힘을 얻지 못하였고, 대법원의 입장은 사실상 도전 불가의 확립된 견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⁴⁾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이후로 저작권법과 관련 지적재산권 법제에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서체와 폰트파일의 저작권 보호체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나아가 그 간 기술과 산업 현실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20여 년 전에 내린 결론이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지금의 관점에서 고민해 보는 것은 적절할 것이다.

1) 판례는 이를 ‘서체도안’이라고 하여 서체를 컴퓨터프로그램 형식으로 기록한 ‘서체파일’과 구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전자를 타이프페이스(typeface), 레터폼(letterform) 등으로, 후자를 폰트(font) 혹은 디지털화된 폰트파일(digitized font file)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판례상의 표현과 현대의 일반적 호칭을 모두 고려해 전자를 ‘서체’ 혹은 ‘서체도안’으로, 후자를 ‘폰트파일’로 부르기로 한다.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3)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62 판결 등.

4)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2016), 266-267면에서는 우리나라의 폰트 관련 논란을 시기별로 1, 2, 3세대로 나누고 그 중 1세대 논란에 관해 “글자의 모양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한 것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법원에서 폰트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하면서 저작권으로의 보호 체계가 갖춰졌다.”고 하여, 위 대법원 판례들에 관한 논의를 이미 종결된 구세대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II. 해외의 서체 관련 권리 보호 현황

1. 일반 현황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2016년에 GUI, 아이콘, 서체(typeface/type font)⁵⁾를 포함하는 이른바 신기술 디자인의 국가별 보호 현황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각 회원국과 정부간 국제기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의 방법으로 실시되었는데, 그중 59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⁶⁾가 응답을 제출했다. ‘서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콜롬비아, 키프로스, 일본, 키르기스스탄, 오만, OAPI가 ‘아니오’라고 답변했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무응답하였으며, 나머지 52개 국가와 EUIPO는 보호를 제공한다고 답했다.⁷⁾ 한편, 서체 보호의 근거 법제에 관하여는 중복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설문했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⁸⁾

보호 근거	디자인 특허법	등록 산업디자인법	비등록 산업디자인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법	기타
국가/지역 수	8	40	16	40	16	17	3

설문에 응답한 총 61개 국가/지역 중 여하한 형태로든 서체에 관한 법적 보호가 제공되는 국가/지역은 53개로 약 90%에 달했다. 그중 디자인 관련 법제를 보호 근거로 하는 국가/지역이 47개로 가장 많았으며,⁹⁾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공하는 곳이

5) 이 조사에서는 “typeface/type font”라는 용어를 서체, 관련 디자인 및 맥락으로서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되는 것과 전통적인 인쇄수단에 적용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6)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API(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7) WIPO, *Compilation of the Replies to the Questionnaire on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Icon, And Typeface/Type Font Designs*, SCT/36/2 Rev., Annex I, at 3-4 (Jan. 17, 2017).

8) *Id.* at 12-13.

9) 서체를 비등록 산업디자인으로 보호하는 16개 국가/지역은 모두 등록 산업디자인에 의한 중첩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등록/비등록 산업디자인법을 보호 근거로 하는 국가는 40개이다. 한편 디자인 특허의 형태로 보호하는 8개 국가/지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한 7곳은 등록/비등록 산업디자인법에 의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설문에 응답한 국가/지역 중 디자인 특허와 등록/비등록 산업디자인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디자인’ 보호체계를 가진 곳은 총 47개이다.

40개로 그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보호 근거에 관해 ‘등록 산업디자인법’과 ‘부정경쟁법’ 항목에 각각 ‘예’라고 답변하였다.

2. 주요 국가의 보호체계

(1) 미국

미국 저작권법은 제102조(a)에서 저작물의 유형으로 “회화, 그래픽 및 조각 저작물”을 예시한다. 제101조에서는 위 유형의 저작물에 2차원·3차원적 그래픽, 응용미술 등이 포함되고, 실용품의 디자인은 그것이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며 물품의 실용적 측면과 분리하여 식별되고 독립하여 존재하는 한도에서만 회화, 그래픽 또는 조각 저작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서체와 관련된 미국의 대표적 케이스로 *Eltra Corp. v. Ringer* 판결¹⁰⁾이 있다. 미국 저작권청이 원고 서체의 저작권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저작권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4순회항소법원은 서체는 실용품과 분리되어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는 산업디자인으로서 1901년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¹¹⁾ 저작권청은 10년 뒤인 1988년, 서체를 나타내는 프로그램도 데이터에 불과하여 저작물로 등록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¹²⁾ 1992년에 이르러서는 규정집인 37 C.F.R. 제202조(e)에 저작권 등록불가 항목으로 ‘서체 자체(typeface as typeface)’만을 포함시키고 서체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신청 시 요구하던 권리포기각서(disclaimer)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폰트파일의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¹³⁾ 이후 1998년에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Adobe Systems Inc. v. Southern Software, Inc. et al.* 사건¹⁴⁾에서 동일한 기호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체 편집자들이 폰트파일을 구성하는 포인트를 창의적으로 선택할 수

10) 194 U.S.P.Q. 198 (E.D. Va. 1976), *aff'd*, 579 F.2d 294 (4th Cir. 1978).

11) 이 사건의 제1심인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제4순회항소법원과 결론에 있어서는 일치하였으나 서체의 저작물성 자체는 인정하였다.

12) U.S. Federal Register, *Notice of Policy Decision on Copyrightability of Digitized Typefaces*, 53 Fed. Reg. 38110 (Sept. 29, 1988).

13) U.S. Federal Register, *Registrability of Computer Programs That Generate Typefaces*, 57 Fed. Reg. 6201 (Feb. 21, 1992).

14) 45 U.S.P.Q.2d 1827 (N.D. Cal. 1998).

있어 그 제작과정에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폰트파일의 보호를 긍정했다.

저작권 보호와 별도로 미국에서 서체는 디자인 특허로도 보호된다. 미국 특허법 제 171조는 디자인 특허의 대상을 “공업생산품의 디자인”으로 정의하는데, 미국 특허청은 1996년에 컴퓨터 등 현대적 조판기술에 의한 서체 디자인의 등록요건 중 ‘공업생산품’을 삭제했다.¹⁵⁾ 이로써 인쇄용 활자판(solid printing block) 등의 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서체 디자인도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유럽 국가들

유럽에서도 전통적으로 서체 자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는 대체로 소극적인 관점이 유지되어 왔다. 유럽 11개국이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국제 기탁에 관한 비엔나협약(비엔나협약)’을 제정하여 서명한 것은 1973년에 이르러서이다.¹⁶⁾

다만 독일은 1981년 비엔나협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특별법¹⁷⁾을 제정하여 서체를 실체심사 없이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보호해 왔다(이 법은 2004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디자인법에 통합, 운용되고 있다).¹⁸⁾ 한편 독일 저작권법상 서체 보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서체도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2000년 쾰른지방법원은 서체 프로그램뿐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⁹⁾

프랑스 지적재산권법²⁰⁾은 제112-2조에서 “그래픽과 타이포그래피 작품(les oeuvres graphiques et typographiques)”을 저작물의 유형으로 명시하며, 제511-1조에서는 디자인 보호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한 “그래픽 디자인과 인쇄용 서체(les car-

15) U.S. Federal Register,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Design Patent Applications for Computer-Generated Icons*, 61 Fed. Reg. 11380 (Mar. 20, 1996).

16) WIPO, “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 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 - Signatories / Contracting parties”,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treaties/en/documents/other_treaties/vtf-parties.pdf), (최종방문일 2018. 12. 7.).

17) Gesetz zum Wiener Abkommen vom 12 Juni 1973 über den Schutz typographischer Schriftzeichen und ihre internationale Hinterlegung.

18) 이철현, “글자체디자인보호의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65-66면.

19) LG Köln, Urteil vom 12.01.2000, Az. 28 O 133/97. 박경신,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 파일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 동향』, 제2015-11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15), 7면에서 인용함.

20)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ernière modification: 7 novembre 2018).

actères typographiques)”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영국의 1988년 저작권·디자인·특허법(Copyright, Design and Patents Act, ‘CDPA’)은 서체가 미술저작물(artistic work)에 해당함을 전제로 제54조(1)에서 일상적인 타이핑, 문서 작성, 인쇄 과정에서 서체를 사용하는 것, 이를 위한 물품의 소지, 서체 사용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CDPA 제55조는 서체로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물품을 최초로 판매·대여·전시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없이 서체 디자인의 복제가 허용된다고 하여 서체의 보호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²²⁾

(3) 일본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은 “미술공예품”을 미술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할 뿐 응용미술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체는 저작권법이 아닌 의장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판례도 인쇄용 서체의 저작물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다.²³⁾ 한편 의장법은 물품성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의장법적 보호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주로 시도되고 있다고 한다.²⁴⁾

(4) 중국

중국 저작권법에는 응용미술작품 규정이 없어 분리가능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서체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법원의 입장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²⁵⁾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인 폰트파일의 경우에는 학설, 판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을 긍정한다.²⁶⁾

21) 박경신, 위의 글, 8면.

22) 김성중, “타이프페이스의 법적 보호론”, 『계간 저작권』, 제8권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1995), 15면.

23) 最高裁判所12年9月7日判時第1730号. 판시내용은 中山信弘, 『著作権法』, 有斐閣(2007), 154면 각주 48 참조.

24) 이철현, 위의 글, 60-61면; 박승민·송양호, “폰트 보호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2018), 385-386면.

25) 박승민·송양호, 앞의 글, 386면; 张玲·王果, “폰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증연구와 교훈(字库单字著作权保护的实证考察及反思)”, 『동북아법연구』, 제7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2013), 1면.

26) 2012年5月30日最高人民法院(2010)民三终字第6号民事判决. 张玲·王果, 앞의 글, 1면 각주 3에서 인용함.

Ⅲ. 서체 관련 권리의 보호를 위한 국내 법제 및 판례

1.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서체도안의 저작권 등록을 반려했던 문화체육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이다. 대법원은 대상 서체도안이 우리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면서, ①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 저작권법이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② 대상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작품은 미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된다는 종래 대법원의 해석(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을 근거로, 대상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했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²⁷⁾에서는 대상 서체도안에 대하여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그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 중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실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서체도안의 창작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서체도안의 저작물성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서체도안을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판결 이후로 대법원이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을 직접 판단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27)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2. 폰트파일의 저작물성을 긍정한 판례

(1)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폰트파일을 구입하여 포맷을 전환하고 오류를 보정한 뒤 자신의 프로그램에 탑재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형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폰트파일이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제작과정에서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값과 그 지시·명령어를 선택하는 것에 폰트파일 제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창의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음을 이유로 폰트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보호를 긍정하였다. 창작성 인정의 근거로 대법원은 폰트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글자를 제작하기 위한 제작창이 가로축 1,000, 세로축 1,000의 좌표로 세분되어 있어 각 제어점의 좌표값이 서로 일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²⁸⁾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않는 이유는 서체도안의 창작성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자의 실용적 기능과 분리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서체가 피해자의 정신적 노력과 고심의 산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그 서체를 구현한 폰트파일 프로그램도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서체도안의 창작성을 근거로 그 폰트파일에도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의 결론은 유지하되 폰트파일의 창작성 인정 근거에 관한 판시는 배척했다. 원심판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폰트파일 창출의 전 제작과정을 일체화하여 전체로서 평가할 때 일반적인 프로그램 제작과정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한 것인데, 서체도안 제작과정에 관한 이러한 사실인정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2)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대법원 98도732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도 형사사건에서와 같은 취지의 판시가 반복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서체도안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 이상 그 폰트파일도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

28) 서울지방법원 1998. 2. 24. 선고, 97노1316 판결.

법원은 서체파일을 단순한 데이터 파일이 아닌 창작성을 갖춘 프로그램저작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참고로 이 사건의 원심판결²⁹⁾은 원고가 투입한 노력과 비용의 핵심적 내용이 “서체 제작자가 독특한 서체의 이미지와 모양을 구상하여 도안하고, 이를 수치데이터화한 뒤, 폰트그래퍼에서 추출한 대략의 윤곽선을 수정하면서 최종적인 좌표값과 연결명령어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서체 생성 과정은 서체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저작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서체파일은 특정한 서체의 원도를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투입된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설시도 있어, 원심이 어떠한 작업의 단계에서 창작성의 근거를 찾았는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대법원은 별다른 설시 없이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이유로 대상 폰트파일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긍정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3)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이 사건은 앞 사건들의 피해자가 다른 침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가 처분 사건이다. 대법원은 앞의 판례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프로그램저작물로서의 폰트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³⁰⁾은 앞의 사건들과 달리 폰트파일의 창작성을 부정했다. 즉 폰트파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체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를 서체로 도안하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드는 반면, 서체도안을 스캐너로 불러와 이미지 파일로 전환한 뒤 폰트그래퍼를 이용해 편집하면 동일한 서체도안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아주 비슷한 좌표값을 가진 폰트파일의 원시코드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폰트파일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경우 아이디어 또는 서체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폰트파일 제작에 투입되는 윤곽선 좌표 선택 등의 창작적 노력을 근거로 폰트파일이 독자적인 창작성 인정의 근거를 가진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29) 서울고등법원 1999. 7. 27. 선고, 98나1654 판결.

30) 서울고등법원 1999. 4. 4. 선고, 98나23616 판결.

3.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

디자인보호법은 2004년 12월 31일 차로 명칭을 기존의 ‘의장법’에서 현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제2조의 “디자인” 정의규정 중 “물품”에 글자체를 포함시키고, “글자체”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³¹⁾ 디자인보호법상의 “글자체”의 정의는 한별성과 통일성, 실용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례상의 “서체도안” 및 각국 법제에서 “타이프페이스”로 지칭하는 대상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글자체 디자인에서 물품성 요건이 삭제되어, 디자인등록에 의해 보호하려는 대상이 인쇄용 활자판과 같은 유형물이 아닌 2차원 디자인(도안)의 형태로 존재해도 무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서체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가 요원해지면서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보호체제로 들어온 것으로 평가된다.³²⁾

한편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 디자인의 효력이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 사용에 의해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³³⁾ 이러한 효력 제한 규정은 영국 CDPA 제54조(1)에서 서체 저작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등록된 글자체 디자인을 통상의 인쇄, 워드프로세싱 등에 사용하거나 글자체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을 실시하는 것은 디자인권 침해가 되지 않고, 글자체 디자인 자체를 생산, 양도, 대여하는 등의 실시행위만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³⁴⁾

31)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32) 서재권,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12), 91면.

33) 디자인보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된 것) 제4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94조)

① (생략)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34) 이상정, “글자체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고”, 『경회법학』, 제39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2005), 266-267면에서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이 등록에 장애가 되는 물품성 요건을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디자인

IV. 비판적 검토의 전제

- 종래의 논의 및 판례에 대한 재평가

1. 종래의 논의에 대한 검토

대법원이 서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판결과 폰트파일의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뒤로 이 주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입장은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비판하는 견해, 대체로 옹호하는 견해, 그리고 대법원에 의해 기존의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보는 견해³⁵⁾가 그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드는 논거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폰트파일 제작과정은 일반적으로 기계적·자동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에 들어가는 창작적 노력은 서체도안 제작의 노력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폰트파일은 서체 구현 프로그램에서 단지 자료로서 기능하므로 본래 의미의 프로그램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폰트파일이 가진 프로그램으로서의 형식적 측면만을 단순히 고려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폰트파일의 창작성 인정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여 지시와 명령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 파일들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³⁶⁾ 셋째, 폰트파일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서체도안을 미술저작물로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문자사용을 제약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 견해는 대법원 판례가 서체도안의 독점을 부당하다고 하면서도 폰트파일의 보호를 긍정함으로써 사실상 우회적으로 독점을 긍정하게 되어 논리모순이라고 한다.³⁷⁾ 위 첫째와 둘째 견해는 서체와 폰트파일의 객관

권의 효력은 활자, 전자적 신호와 같은 물품에 화현되어 동일한 글자체의 재생이 가능한 매체에 고정되는 경우에만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디자인 실시 태양의 하나인 '생산'에 의한 침해의 예로 등록 글자체와 동일·유사한 글자체를 만드는 것, 예컨대 폰트파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를 예시한다.

35) 박익환, "서체파일의 저작물성(서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법관례백선(I)』, 박영사(2006), 407-408면; 김현숙, 위의 글, 266면 등.

36) 임원선, "글자체의 법적 보호", 『계간 저작권』, 제14권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01), 41-42면.

37) 박준석,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 - 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8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12), 23면.

적 성격을 고찰하여 판례에 비판적인 견해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와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서체와 폰트파일의 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관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이해하고 있다(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 2.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한다). 위 셋째 견해는 이론적 측면에서 대법원 판례의 논리모순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으나 실천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한편 판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① 서체(도안)에 대해서는 입법에 의하지 않고 해석론만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장기간의 보호’를 부여하는 해외 입법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없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거나,³⁸⁾ ② 폰트파일의 경우 전자출판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업계의 경쟁도 치열하므로 이를 프로그램으로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제시한다.³⁹⁾ 이처럼 판례를 옹호하는 견해도 대법원의 판단에 산업정책적 측면이 고려되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기존의 논란을 정리하였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폰트파일을 보호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고려되었다는 점을 판결의 의미로 언급한다.⁴⁰⁾ 판례 옹호론에 관해 우선 지적할 점은, 동일한 현실적 측면의 요소를 서체와 폰트파일 양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서체의 저작권 보호 부정의 근거로 제시된 해외 입법 현황을 폰트파일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적용한다면 폰트파일에 대한 판례 옹호의 근거가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

과거의 논의는 각자 의의와 논쟁적 요소를 안고 있는 다양한 견해들을 포함한다. 지면의 제약을 고려할 때 종래의 각 견해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는 통사적 논문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각 견해의 개별성을 넘어 발견되는 공통적 특징은, 서체와 폰트파일을 저작권 보호의 측면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견해와 지지하는 견해 모두 서체산업의 현실적 조건 내지 전망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전제가 된 법적·사실적 상태에 변동이 있었거나 현실적 조건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20여 년 전 대법원이 내린 판단의 타당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다루고자 한다.

38) 이성호, “서체도안의 저작물성과 등록관청의 저작물등록 심사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27호, 법원도서관(1997), 601-603면.

39) 이수완, “서체파일의 프로그램저작물성과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과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37호, 법원도서관(2001), 376, 385면.

40) 박익환, 위의 글, 408면.

2. 판례상 서체도안과 폰트파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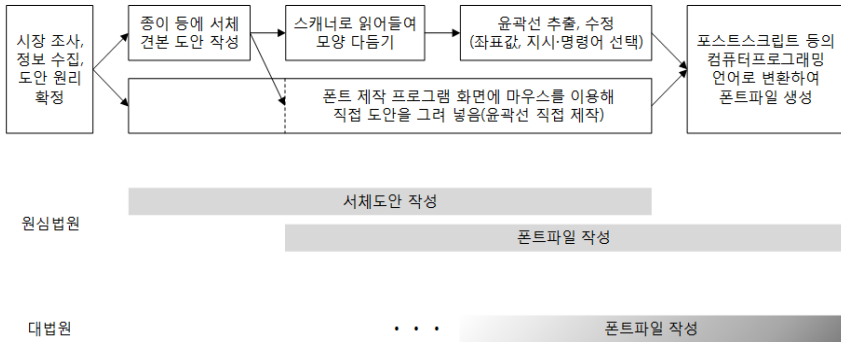
대법원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들 중 다수는 폰트파일의 제작과정을 서체도안 제작 후 이를 컴퓨터로 읽어 들여 소정의 수정작업을 거쳐 폰트파일을 생성하는 단선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폰트파일 제작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관점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체 디자이너는 서체도안을 완성한 뒤에 이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스케치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한 다음 윤곽선을 완성하여 서체의 도안을 완성한다. 손글씨 형태의 서체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컴퓨터로 도안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⁴¹⁾ 특히 한글 서체의 경우에는 작성할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⁴²⁾ 통상 도안 작업은 한글 자모와 대표 글자의 도안을 완성한 뒤 이를 컴퓨터상에서 조합해 글자꼴의 균형을 맞추고 다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⁴³⁾ 폰트파일 제작은 서체 원도를 그대로 ‘재현’하는, 누가 하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되는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 손과 컴퓨터로 서체의 윤곽선을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디자인 감성을 발휘하여 글자꼴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서체 원도 제작’을 서체의 기본 모양을 그리는 과정 내지 폰트파일 제작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작업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이러한 서체도안 완성 및 폰트파일 제작의 모습은 앞서 살펴본 서울지방법원 97노1316 판결에 비교적 상세히 실시되어 있다. 상고심인 대법원 98도732 판결은 위 원심 판결이 서체도안의 창작성을 폰트파일의 창작성 인정 근거로 삼았던 판단을 배척하면서 폰트파일의 창작성은 서체의 윤곽선을 구성하는 제어점들의 좌표값과 지시·명령어의 선택으로 표현된 창의적 개성으로부터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원심이 서체도안의 창작성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의 원심법원과 대법원의 관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1) 이연경, “한글 폰트 디자인의 세계”, 중앙일보 2015. 10. 4., <<https://news.joins.com/article/18788119>>, (최종방문일 2018. 12. 7.).

42) 국가기술표준원이 1987년 KS C 5601:1987로 제정하고 2004년 KS X 1001:2004 코드로 개정된 한글 완성형 문자 규격에 따른 글자의 수는 2,350자이다. 그러나 한글의 초성·중성·종성의 모든 조합을 표현하는 11,172자를 모두 디자인하는 경우도 많다. 노민지·임윤구, “KS 코드 완성형 한글의 추가 글자 제안”, 『글짜씨』, 제7권 제2호,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2015), 156면.

43) 이용제, “효율적인 한글 활자디자인을 위한 대표 글자 연구”, 『글짜씨』, 제4권 제1호,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2012), 1190-1191면; 강서진·최성열, “폰트디자이너 생생인터뷰”, 모두매거진 2015. 10. 29., <<http://modumagazine.co.kr/archives/5235>>, (최종방문일 2018. 12. 7.).



위 그림은 서체도안과 폰트파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시각디자인에 해당하는 서체도안과 컴퓨터프로그램인 폰트파일은 그 제작과정과 창작성 판단이 서로 다른 층위에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된 서체의 윤곽선을 다듬는 작업은 서체도안 작성의 한 단계인 동시에, 폰트파일 제작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즉, 서체도안과 폰트파일의 각 제작과정은 개념적으로 중첩될 수 있다.⁴⁴⁾ 양자의 창작성 판단 기준도 그 표현 양식의 차이(시각적 표현과 컴퓨터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표현)로 인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폰트파일의 저작물성을 긍정한 III.2.항의 대법원 판례들은 공히 서체도안 작성과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폰트파일 제작상의 좌표값과 지시·명령어의 선택만을 창작성 판단에 고려함으로써, 서체도안의 작성과정 내지 창작성 유무를 폰트파일의 보호가부 판단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일 뿐, 서체도안의 창작성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44) 대법원 99다50552 판결도 '독특한 서체의 이미지와 모양을 구상하여 도안하고 이를 수치데이터화하여 최종적인 좌표값과 연결명령어를 설정하는 일련의 서체 생성 과정을 고찰할 때 폰트파일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였다. 대법원은 폰트파일 제작을 서체도안 작성에 후행하는 최종 단계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한편 폰트파일의 저작물성을 긍정한 모든 대법원 판례가 글자의 윤곽선을 '수정'하는 작업만을 창의적 개성의 표현으로 실시하지 않고, 윤곽선을 '수정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제어점들의 좌표값과 지시·명령어의 선택을 그러한 개성의 발로로 판단했다는 점은 대법원이 서체도안을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제작하는 것까지도 폰트파일 제작과정의 일부로 보았음을 시사한다.

V. 법제도 측면의 검토

1. 응용미술저작물 보호제도의 도입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은 제2조에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정의를 추가했다.⁴⁵⁾ 응용미술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고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인정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반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구법에서도 미술저작물의 하나로 ‘응용미술작품’을 예시하고 있었으나, 디자인보호법과의 중첩적 보호 논란을 배경으로 대법원은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 인정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보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고, 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은 이러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에 관해 구법하의 대법원 판례가 실시한 요건은 응용미술작품이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창작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되, 예외적으로 실용적 기능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⁴⁶⁾ 그러나 이처럼 응용미술작품에 대해 ‘실용적 기능과의 분리가능성’ 및 ‘독자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저작물성을 판단했던 대법원의 태도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의 이른바 ‘히딩크 넥타이’ 사건⁴⁷⁾을 계기로 크게 바뀐다.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⁴⁸⁾은 종래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

45)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의2. 응용미술저작물 :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등을 포함한다. <현행법에서는 제15호>

4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등. 그 밖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응용미술작품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례들이 다수 있다. 차상욱,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창작과 권리』, 통권 제45호, 세창출판사(2006), 83면.

4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48) 서울지방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노7459 판결.

치를 가진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실시하며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을 상하좌우 연속 반복한 벡타이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지만, 상고심에서는 당해 벡타이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는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을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요건을 만족하는 이상 보호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구법하의 관례들이 응용미술작품에 대해 취해오던 원칙(저작물성 부정)과 예외(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저작물로 인정)의 관계를 바꾼 것이다. 이처럼 2000년 저작권법 개정은 응용미술에 관한 기존의 관점을 크게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구법을 바탕으로 응용미술작품에 독자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요구하던 기존의 대법원 관례들은 개정법의 해석상 그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⁹⁾

앞서 본 대법원 94누5632 판결은 구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창작된 서체도안을 다루고 있다. 서체는 “디자인”에 해당하며 그것이 적용된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의 면에서 2000년 개정 이후의 저작권법에서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응용미술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물품”을 서체가 새겨진 인쇄용 활자판과 같은 유체물로 상정한다면 그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날의 서체는 다양한 인쇄매체(서적, 현수막, 포스터 등)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화면 등에도 표시될 수 있어 그 서체가 적용된 물품이 단일한 종류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서체는 물품과의 분리가능성 및 독자적 존재가능성을 모두 갖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관점도 제시될 수 있다.⁵⁰⁾

이와 관련하여 서체를 응용미술저작물로 포섭하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서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표현인 동시에 다른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기능하는 다소 복합적 성격의 기능적 표현물이라는 점에서

49)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제3판)』, 홍문사(2013), 299면 각주 76. 같은 취지로 대법원 판결들이 분리가능성 요건에 관해 상반된 기준을 제시하며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는 점을 비판하는 견해로는 박성호,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2017), 98-99면 참조.

5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품에 표시된 것 외에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형태로도 사용된 캐릭터 도안에 대하여, 그 캐릭터 도안이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도안 그 자체로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관시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도안에 대해서는 물품과의 분리가능성을 당연히 인정하는 전제에서 미술저작물로서의 창작성 기준만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물품을 매체로 구현될 수 있는 서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법이 예정한 전형적인 응용미술저작물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 다수의 글자 모양이 한 벌로 제공될 때에 비로소 완성된 도구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서체를, 특정한 글자 모양을 물품의 형상으로 삼거나 각 글자를 상하좌우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하여 얻어지는 디자인과 과연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도 같은 의문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개정에 의한 현행법 체제에서 구법을 토대로 마련된 기준에 의해 서체도안의 보호를 부정한 대법원 94누5632 판결이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점과,⁵¹⁾ 구법하의 관례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을 판단하기 위해 포섭한 응용미술작품은 현행법의 범주상으로 응용미술저작물에 가장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제는 서체가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능성을 탐색하는 쪽으로 법리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⁵²⁾

2.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글자체 보호

2004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의해 물품성이 구비되지 않은 “글자체”가 디자인등록 대상에 포함되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의 보호기간은 디자인이 설정등록된 날로부터 출원 후 20년까지로, 저작권법에 따른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기간보다 짧다.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통상의 방법에 따른 글자체의 일상적 사용 및 그 사용의

51) 같은 취지. 이철남, “서체파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 - 최근의 국내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2018), 171면.

52) 다만, 서체를 응용미술저작물로 보건, 순수미술저작물로 보건, 기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저작권법상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단지 예시되지 않은 비전형 저작물로 보건 간에, 서체의 저작물성 판단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는 줄건을 다음과 같이 밝혀둔다. 서체도안은 그것이 적용되는 물품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외에도, 문자의 형태에 의해 표현의 자유도가 제약된다는 점에서 관례에서 다루어진 동물 캐릭터 도안과 유사하다. 관례는 특정 동물의 공동모형 내지 원형(prototype)이 가진 이미지에 의해 그 동물을 소재로 하는 캐릭터 도안의 표현이 제약됨을 이유로 캐릭터 도안의 저작물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서체의 한벌성이 분리가능성에 극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한 벌의 동물 캐릭터 도안을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각 동물을 안내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하나의 독창적인 동물 캐릭터 도안과 달리 취급하거나, 올림픽과 같은 종합 스포츠 경기대회에서 각 종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한 벌의 도안에 대해 그것이 한 벌로 제시되는 순간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안의 기저 특징을 이루는 대상의 원형적 이미지는 표현의 ‘소재’일 뿐이다. 동일한 관점에서 서체도안을 문자를 소재로 한 도안의 묶음으로 본다면, 그 소재인 문자의 실용적 기능만으로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형평하지 않다. 이미 수천 종의 서체도안이 독립하여 존재하고 상호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는 현실은 문자의 실용적·기능적 측면이나 그 기본 형태에 의한 표현의 제약을 이유로 서체도안을 저작권 보호범위 밖으로 완전히 밀어낼 근거가 미약함을 반증한다. 차라리 문자의 기본 꼴로 인한 서체들 간의 공통점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과물에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 서체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위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은 CDPA에 따른 영국의 서체 저작권 보호체계와 유사점이 있고, 보호기간도 비엔나협약에서 정한 최장 25년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러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글자체 디자인의 보호가 가능해졌으므로 서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 보호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감소하였다는 지적이 가능하며, 여기에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2000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산업디자인에 속하는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에 들어오게 되었고, ‘히딩크 벡타이’ 사건 판결 이후로 대법원도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중첩적 보호에 대한 중전의 소극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선회하였다.⁵³⁾ 이후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중첩 보호를 긍정한 입법자의 의사나 대법원의 태도에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로 작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서체를 비롯한 응용미술저작물의 중첩 보호를 긍정할 실용적인 이유도 있다. 저작권과 달리 디자인권은 방식주의를 따르며 신규성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 글자체에 대해서만 디자인권을 부여하므로 그 권리의 발생·유지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가정할 때 유사한 서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창작된 이상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디자인권은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할 경우 등록이 무효로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호에 위협요인이 존재한다. 그 밖에도 디자인권 침해에는 “업(業)으로서”의 실시가 요구되므로 사적으로 글자체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⁵⁴⁾ 이처럼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와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서로 다른 요건과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으로 서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3) 박성호, 위의 책, 99면에서는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중첩 보호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선회를 사실상의 판례 변경으로 보고 있다.

54) 김현숙, 위의 글, 273면.

VI. 기술 및 산업 현실 측면의 검토

1. 폰트파일의 특수성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들은 대법원이 서체도안의 작성과 폰트파일의 제작을 순차적으로 배치된 각각의 완결된 과정 내지 이질적인 단계로 파악하였다는 전제에서, 서체도안 작성을 ‘창작’으로 평가하고, 폰트파일 제작은 엔지니어링의 성격을 갖는 ‘기계적 작업’으로 격하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대법원은 서체도안의 창작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폰트파일의 창작성을 판단하기 위해 폰트파일 제작과정을 이루는 전 단계 중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선택하는 부분에 주목하였을 뿐이다. 서체도안의 창작성에 대해 대법원이 어떠한 견해를 취하였는지는 사실 명백하지 않다. 이 점에서 서체도안 작성과 폰트파일 제작을 순차하는 단계로 놓고 후자를 전자 이후의 나머지 과정만으로 파악하는 견지에서 대법원이 서체도안 작성에 들어가는 창작적 노력을 과소평가하였다거나 폰트파일의 창작성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는 종래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논리는 한 가지 중요한 약점을 안고 있다. 폰트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니 ‘프로그램적 창작성’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관점에 간혀, 그 구성요소인 좌표값과 지시·명령어의 구체적인 의미 및 서체의 디지털 표현 담지체로서의 폰트파일의 고유한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폰트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포섭하고, 코딩에 의하지 않는 폰트파일 제작과정을 프로그램의 창작으로 파악한 점은, 다양한 UI/UX 요소들의 배치를 자동화하거나 이들 요소를 쉽게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각종 편의적 툴(tool)을 갖춘 오늘날의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⁵⁵⁾ 그러나 대법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간과한 점은 아쉽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각종 저작권 조약에서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며,⁵⁶⁾ 기능의 수행을 본질로 하므로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보호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⁵⁷⁾ 하지만 오늘날 컴퓨터프로그램은 ‘표

55) 이수완, 위의 글, 370면.

56) TRIPS 협정 제10조, WIPO 저작권조약 제2조.

현적 기능성'이라 지칭해도 좋을 만큼 기능 요소와 표현 요소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⁵⁸⁾ 최근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플랫폼별로 서로 다른 코드로 작성되어 그것이 적용되는 플랫폼에 따라 소스코드와 목적코드, 실행코드가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컴퓨터프로그램은 순수한 어문저작물이 아닌 어문저작물과 영상저작물 등의 성격을 겸유하는 일종의 결합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로 인정된다.⁵⁹⁾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종(異種) 저작물들의 결합체로 보면, 화상·영상·음악·어문저작물 등 각 구성요소별로 개별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폰트파일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폰트파일은 서체를 표현하는 것 외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폰트파일의 코드와 그것이 표상하는 서체를 하나의 결합저작물의 개별 구성요소로 분리할 수 없다. 폰트파일을 구성하는 지시·명령은 서체의 윤곽선을 그리기 위한 도구인바, 이는 곧 서체를 표현하는 것이 폰트파일의 기능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폰트파일의 '기능'은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순수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특정한 서체의 표현과 일체화된 기능 내지는 그 서체의 시각적 표현을 직접 표상하는 기능이다. 나아가 폰트파일이 상호 변환이 가능한 포맷(OpenType, TrueType 등)에 따라 그 코드가 달라지더라도 서체의 표현은 사실상 동일할 수 있다는 점에 생각이 미치면,⁶⁰⁾ 서체의 보호를 도외시킨 채 그 서체를 직접 예정하고 표상하는 코드만을 컴퓨터

57) 이수완, 위의 글, 357면.

58) 소프트웨어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텍스트와 행태(behaviour)로 구성된 복합적 성격으로 규정될 수 있다. Law Right, "Is copyright an appropriate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https://www.law-right.com/is-copyright-an-appropriate-protection-for-computer-programs/>), (최종방문일 2018. 12. 7.).

59)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에서 "게임은 다양한 소재 내지 소재저작물로 이루어진 결합저작물 내지 편집저작물"이라거나 "원고 게임과 같은 영상저작물"이라고 판시하는 등 법원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단순한 어문저작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유사한 관점에서 닌텐도 DS용 비디오게임이 어문, 음악, 사진 및 영상저작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규정과 '영상 등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보호' 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BGH Beschluss vom 6.2.2013 - I ZR 124/11 - Videospiele-Konsolen (박희영, "독일" 대법원,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조치의 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판단 요청", 『저작권 동향』, 제2013-04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13), 2-3면에서 인용함). 박성호, 위의 책, 135면도 컴퓨터프로그램을 각각의 구성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60) 윤곽선 폰트파일의 대표적인 포맷인 True Type 폰트(TTF)와 Open Type 폰트(OTF)는 각각 윤곽선을 구현하는 수학적 모델로 2차 베지어 곡선과 3차 베지어 곡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모델은 제어점의 위치와 개수가 다르므로, 폰트파일 포맷만 바꾸더라도 윤곽선을 구성하는 제어점과 연결선의 지시·명령에 관한 특징이 전면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 폰트파일의 이러한 특징은 폰트파일의 창작성을 판단함에 있어 서체도안의 시각적·장식적 요소를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순수 그래픽적 요소인 제어점과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는 것은 폰트파일이 지닌 특수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 속성과 조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폰트파일의 속성은 서체의 윤곽선을 적은 양의 데이터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지시·명령의 형식을 택한 결과일 뿐 본질에 있어서는 문서 파일이나 그림 파일과 다를 바가 없는 데이터로서의 성격으로도 설명된다.⁶¹⁾ 서체에 비해 더욱 복잡한 3차원 모델을 표현하는 3D 프린터 출력용 파일 포맷인 ‘STL 파일’은 무수히 많은 삼각형의 꼭짓점 좌표와 방향 벡터에 관한 데이터로 구성되고 지시·명령은 포함하지 않아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체로 평가된다.⁶²⁾ 특정한 디자인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를 바가 없음에도 형식적 기준에 따라 STL 파일은 데이터로, 폰트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결국 폰트파일이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구성되는 것은 그 폰트파일을 구동하는 프로그램과 폰트파일 사이의 하나의 약속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역사적 혹은 기술적인 이유에서 연원한 우연적 산물로서 가변성을 본질로 한다. 폰트파일의 보호근거가 이러한 우연적 요소에 있다는 점은 적어도 이론적 차원에서 보호의 불안을 초래한다. 나아가 폰트파일이 데이터적 속성을 일부 겸비한다는 점은 그 파일 자체의 작성 노력보다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서체도안의 특징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창작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2. 폰트 제작 현실의 변화

폰트 제작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서체 디자이너가 사용하는 고가의 툴에서부터 국내 외에서 제작된 비교적 저렴한 소프트웨어와 FontForge와 같이 무료로 배포되는 오픈 소스 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⁶³⁾ 폰트파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상 폰트파일을 직접 복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서체도안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구매한 폰트파일로 개개의 글자꼴들을 인쇄한 뒤 이를 스캐너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⁶⁴⁾ 그렇다면

지시·명령의 선택만을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약점을 드러낸다.

61) 임원선, 위의 글, 40-41면.

62) 지선구·한원덕, “3D 프린팅과 특허발명의 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6), 46면.

63) 박성훈·정유권, “폰트 제작 툴과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피 서울 2012. 8. 10.,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224>), (최종방문일 2018. 12. 7.).

누구나 무료 또는 저렴한 폰트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체도안을 디지털 데이터로 읽어 들인 뒤 윤곽선을 수정, 편집하여 새로운 폰트파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 밖에도 메타폰트를 이용한 디자인 기법에 의하면 서체의 기본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를 조절하여 펜의 모양이나 상대적 굵기, 빼침의 형상, 자모의 폭 등에 변이를 주는 것이 가능하므로,⁶⁵⁾ 만약 이런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상업용 서체도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폰트파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극도로 용이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재생된’ 폰트파일은 원본 폰트파일과 제어점이나 연결선의 지시·명령의 선택에 있어 상이할 것이고, 상업적으로 배포될 경우 원본 폰트파일 저작자의 경쟁적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⁶⁶⁾ 폰트파일 제작이 현저하게 용이해진 기술적 현실을 감안할 때 서체에 대한 보호를 피하고 폰트파일만을 보호하는 것은 폰트파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여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다.

한편 오늘날의 서체 디자인은 대부분 컴퓨터를 제작도구로 사용한다. 이는 과거 활자판과 같은 물리적 매체에 그 형상을 직접 새겨넣는 방식으로 서체를 제작하던 것과 뚜렷이 구별된다. 이러한 제작 환경의 변화는 서체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했다. 과거에는 활자판을 이루는 목재, 납, 구리 등 재료의 특성에 의하여 서체의 표현이 제약되었으나, 서체를 컴퓨터로 그리게 되면서 그러한 제약이 사라졌다.⁶⁷⁾ 이에 따라 붓글씨, 펜글씨와 같은 다양한 스타일 및 획의 굵기와 끝처리 표현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되어 서체의 다양성이 급증했다. 서체의 다양화는 서체의 표현물로서의 지위를 강화한다.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대법원의 결론이 현재의 시점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6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정494, 2012고단1923 판결(병합)은, 블로그에 게시된 글자 이미지를 캡처하여 그림 파일로 저장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그 그림파일을 불러들여 필요한 글자의 외곽선에 점을 찍는 작업을 거친 다음 그 점들을 이어 글자를 완성해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65) 최재영·권경재·손민주·정근호, “메타폰트를 이용한 차세대 CJK 폰트 기술”, 『글씨씨』, 제9권 제1호,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2017), 89-100면 참조.

66) Travis L. Manfredi, *Sans Protection: Typeface Design And Copyright in the Twenty-First Century*, 45 U.S.F. L. Rev. 841, 859-860 (2011).

67) Blake Fry, *Why Typefaces Proliferate without Copyright Protection*, 8 J. Telecomm. & High Tech. L. 425, 450 (2010).

3. 기술의 발전과 시장상황의 변화에 내포된 법경제적 함의

서구를 중심으로 서체의 저작권 보호에 소극적인 입장이 견지되어 온 것은 과거에 서체가 인쇄용 활자판의 형태로만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활자판을 보유한 인쇄업자들은 소수였고 활자판에 접근하여 복제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았다. 서체의 제작이 주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이루어져 유의미한 잠재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체 제작자는 사후에 서체가 유통되어 경제적 이익을 거둘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서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여 창작을 유인할 동기는 크지 않았던 반면에,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더라도 제작자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도 비교적 낮았다.⁶⁸⁾ 또한 서체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체 자체를 저작권법의 보호체계에 편입시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지체 등의 부작용으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체 제작 및 사용 환경은 전통적 입장이 전제하던 사실상태와 크게 다르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정보전달매체의 다양화에 힘입어 서체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폰트파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이 되었다. 워드프로세싱과 함께 유행한 ‘전자출판(Desktop Publishing, DTP)’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 이제 개인용 컴퓨터를 소유한 누구라도 ‘작은 인쇄업자’가 될 수 있다. 인쇄업자뿐 아니라 아마추어 서체 디자이너도 될 수 있다. 서체가 아닌 폰트파일만을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폰트파일 제작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간 새로운 서체가 많이 보급되었고⁶⁹⁾ 그중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는 서체도 상당수에 이른다. 서체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특정 서체를 독점하는 것을 문자의 독점과 동일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서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경우 현대사회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감소했다. 종래에도 문자의 정보 전달 기능과 서체의 심미적·실용적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나,⁷⁰⁾ 서체의 수와 종류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지적은 더욱 타당성을 얻게 되었다.

68) Manfredi, supra note 66, at 851-852, 854-855.

69) 1998년까지 개발된 한글 서체는 약 1,200종이었으나, 2015년에는 그 수가 약 6,000종으로 늘었다. 2015. 12. 에 조사된 5,941종 가운데 2014년과 2015년 상반기에 개발된 서체만 716종에 이를 만큼 서체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승철, “글자꼴의 의장법적 보호방안”, 『지식재산21』, 통권 제81호, 특허청(2003), 70면; 이용제 외, 『글꼴 산업의 현황 조사와 전망 보고서』, 국립한글박물관(2015), 34-42면.

70) 김성중, 위의 글, 19면.

문자의 기본 형태 및 이를 소재로 삼아 디자이너가 표현한 장식적·심미적 요소로 구성되는 서체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외에 인상(印象)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감성교육, 심리치료,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의 분야에서 서체 선택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체의 기호적 요소가 아닌 디자인적 요소에서 나오는 ‘인상’ 내지 ‘인상 전달 효과’가 갈수록 큰 의미를 얻어가고 있다.⁷¹⁾

4. 소결

지난 20여 년간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 서체와 폰트파일을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보호의 차등이 지닌 이론적 결함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관련 산업의 현실과 문화정책적 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였다는 옹호론 내지는 서체의 저작권 보호 긍정 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응용미술저작물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개정과 기술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보호체계를 유지 보수하는 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이 글은 그러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VII. 결론 및 전망

우리 대법원은 미국의 예를 따라 서체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부정하고 폰트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대법원이 그 견해를 천명한 이후로 서체와 폰트파일의 차등적 보호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과거의 논의를 발판으로 그간의 법제도와 기술적 변화 등의 측면에서 대법원의 차등적 저작권 보호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 부정된다는

71) 어도비코리아, “글꼴의 기능과 디자인에 적합한 글꼴 선택 방법”, (<https://blogs.adobe.com/creative-dialogue/ko/design-ko/whats-in-a-fonts-can-define-your-design/>), (최종방문일 2018. 1. 17.)에 의하면, 활자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글꼴은 그 유형에 따라 글을 읽는 사람에게 다양한 느낌을 전달하는데, 사용된 글꼴 스타일만으로 텍스트를 읽기 전에 핵심 메시지를 간파할 수도 있다. 이용재, “한글 글자체의 인상(印象)”, 『글짜씨』, 제9권 제2호,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2017)에서는 한글 서체의 인상을 객관화하려는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결론은 현재의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고, 폰트파일의 저작물성을 긍정한 점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논거에 있어 미흡한 면이 발견된다.

서구에서 서체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 견지되어 온 것은, 구텐베르크 이후 수백 년에 걸쳐 근대 활자인쇄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형성해온 법적 현실에 대한 고려와 인쇄기술이 성경의 보급과 근대혁명을 통해 지식 확산과 문화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온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속활자라는 뛰어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후반 근대 인쇄기술을 수입하기 전까지 활자인쇄가 대중화되지 못했다.⁷²⁾ 따라서 III.장에서 살핀 대법원의 입장은 우리 고유의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선례를 서둘러 도입한 결과로 비쳐진다. 과거 우리 대법원이 물품과 결합된 '타자기의 글자 배열표'에 대해 오히려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서구적 전통과 조화될 수 없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⁷³⁾은, 우리의 독자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고찰의 부재를 암시한다.

대법원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에는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서체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되 이로 인해 문자의 사용이 방해받지 않도록 공정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35조의3 등의 해석에 의하여 그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둘째는 저작권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의 입법적 수단을 통해 서체의 보호와 효력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지만 오래된 대법원 관례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어 활발한 논의의 계기가 마련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는 양자의 저작권 보호를 모두 부정하고 기술적 조치나 계약법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수단은 완전할 수 없고 라이선스에 의하는 방안은 실행에 많은 비용을 요하므로 복제물이 널리 배포되어야 저작권자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저작물의 관리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⁷⁴⁾ 결국 산업현실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정미한 폰트파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 남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에 주의를 돌려보면, 아무 제한 없이 서체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을 경우 저작

72) 김동식, “근대의 표상체계와 인쇄 테크놀로지”, 사이언스타임즈 2005. 5. 13., <<https://www.sciencetimes.co.kr/?news=근대의-표상체계와-인쇄-테크놀로지>>, (최종방문일 2019. 1. 2.).

73)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76 판결.

74) William M. Landes & Richard Posner, *An Economic Analysis of Copyright Law*, 18 J. Legal Stud. 325, 330 (1989).

권의 남행사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⁷⁵⁾ 이는 서체도안의 저작권 보호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그 이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례판결로서 나름의 기능을 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서체와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차등을 통해 실현되어 온 이념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법적 신뢰의 가치를 고려하여, 대법원의 결론은 유지하되 법적 토대를 새롭게 쌓는 절충적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서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보호가능성 판단에 중심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정하되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점진적인 전환을 추구하고, 폰트파일의 경우에는 그 창작성 인정 근거를 폰트파일 제작과정 중 제어점들의 선택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서체 디자인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연속적인 전체 과정에서 찾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폰트파일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서체의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쪽으로의 판례 변경을 당장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서체 자체의 보호 근거와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암시할 수 있다. 법원에서 위와 같은 방향으로 태도의 전환이 누적되면 서체의 일상적 사용 내지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 행사의 근거로서 서체의 저작물성 인정을 요구하는 법률수요가 증가하리라는 우려가 있겠으나, 혼란 상태가 장기간 방치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합리적인 서체 관련 저작권 보호체계의 입법에 관한 건전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5) 제19대 국회에서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의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비영리의 일정 규모 이하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비친고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박승민·송양호, 위의 글, 391면 각주 45에서 인용함.

Abstract

Practical Foundations of Reconsidering Copyright Protection for Typefaces and Digital Fonts

Shiwon Ryu*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protect digital fonts as computer program works while denying copyright protection for typefaces in late 1990s and early 2000s. Reviewed in this article is whether the discriminative copyright protection for typefaces and digital fonts is still valid at present where changes have occurred in legislative, technical and industrial aspects.

As the Copyright Act revised in 2000 explicitly protects applied art works,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based on the former act lost their legal grounds. The changes in technology undermines basis for denying copyrightability of typefaces, while emphasizing insufficiency of protecting digital fonts only. Since the number of typefaces increased, monopolizing typefaces does not necessarily mean monopolizing character sets. As well, the same change reduced social costs required by demanding copyright protection for typefaces. Meanwhile, as the ornamental features of typefaces emerge in many industrial fields, challenges are posed to the existing position based on the naive viewpoint of finding the functionality of typefaces in information transfer alone.

Now, the validity of unequal copyright protection for typefaces and digital fonts requires re-discussion. Meaningful discussion will begin by a minor transition as determining the copyrightability of typefaces based on the definition of applied art works in the Copyright Act and finding the grounds for digital fonts' creativity in the entire process of making the same.

* SHIN & KIM, Attorney at law

Keywords

Typeface, Letterform, Font, Digital Font, Computer Program, Computer Program Works, Applied Art Works, Copyrightability

참고문헌

〈국내 단행본〉

- 박성호, 『저작권법(제2판)』, 박영사(2017).
이용제 외, 『글꼴 산업의 현황 조사와 전망 보고서』, 국립한글박물관(2015).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제3판)』, 홍문사(2013).

〈국내 학술지〉

- 김성종, “타이프페이스의 법적 보호론”, 『계간 저작권』, 제8권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1995).
김현숙, “PDF 문서에 사용된 폰트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2016).
노민지·임윤구, “KS 코드 완성형 한글의 추가 글자 제언”, 『글씨씨』, 제7권 제2호,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2015).
박경신,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포함된 서체 파일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 동향』, 제2015-11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15).
박승민·송양호, “폰트 보호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2018).
박익환, “서체파일의 저작물성(서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법판례백선(I)』, 박영사(2006).
박준석, “콘텐츠 산업에서의 저작권 - 최근 1년간의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LAW & TECHNOLOGY』, 제8권 제5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2012).
박희영, “독일 대법원,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조치의 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판단 요청”, 『저작권 동향』, 제2013-04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13).
서재권,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대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12).
이상정, “글자채디자인권의 침해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39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2005).
이성호, “서체도안의 저작물성과 등록관청의 저작물등록 심사권의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 통권 제27호, 법원도서관(1997).
- 이수완, “서체파일의 프로그램저작물성과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과 범위”,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37호, 법원도서관(2001).
- 이용제, “한글 글자체의 인상(印象)”, 『글짜씨』, 제9권 제2호,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2017).
- 이용제, “효율적인 한글 활자디자인을 위한 대표 글자 연구”, 『글짜씨』, 제4권 제1호, 한국 타이포그래피학회(2012).
- 이철남, “서체파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 - 최근의 국내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2018).
- 이철현, “글자체디자인보호의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 임원선, “글자체의 법적 보호”, 『계간 저작권』, 제14권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2001).
- 张玲·王果, “폰트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실증연구와 교훈(字库单字著作权保护的实证考察及反思)”, 『동북아법연구』, 제7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2013).
- 전승철, “글자꼴의 의장법적 보호방안”, 『지식재산21』, 통권 제81호, 특허청(2003).
- 지선구·한원덕, “3D 프린팅과 특허발명의 법적 보호”,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 지식재산연구원(2016).
- 차상욱,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창작과 권리』, 통권 제45호, 세창출판사(2006).
- 최재영·권경재·손민주·정근호, “메타폰트를 이용한 차세대 CJK 폰트 기술”, 『글짜씨』, 제9권 제1호,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2017).

〈국내 판례〉

-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76 판결.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62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9. 4. 4. 선고, 98나23616 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9. 7. 27. 선고, 98나165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2고정494, 2012고단1923 판결(병합).

서울지방법원 1998. 2. 24. 선고, 97노1316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노7459 판결.

〈국외 학술지〉

Blake Fry, *Why Typefaces Proliferate without Copyright Protection*, 8 J. Telecomm. & High Tech. L. 425 (2010).

Travis L. Manfredi, *Sans Protection: Typeface Design And Copyright in the Twenty-First Century*, 45 U.S.F. L. Rev. 841 (2011).

William M. Landes & Richard Posner, *An Economic Analysis of Copyright Law*, 18 J. Legal Stud. 325 (1989).

〈국외 판례〉

194 U.S.P.Q. 198 (E.D. Va. 1976).

45 U.S.P.Q.2d 1827 (N.D. Cal. 1998), *aff'd*, 579 F.2d 294 (4th Cir. 1978).

BGH Beschluss vom 6.2.2013 - I ZR 124/11 - Videospiel-Konsole.

最高裁判所12年9月7日判時第1730号.

2012年5月30日最高人民法院(2010)民三终字第6号民事判决.

〈국외 자료〉

U.S. Federal Register, *Guidelines for Examination of Design Patent Applications for Computer-Generated Icons*, 61 Fed. Reg. 11380 (Mar. 20, 1996).

U.S. Federal Register, *Notice of Policy Decision on Copyrightability of Digitized Typefaces*, 53 Fed. Reg. 38110 (Sept. 29, 1988).

U.S. Federal Register, *Registrability of Computer Programs That Generate Typefaces*, 57 Fed. Reg. 6201 (Feb. 21, 1992).

WIPO, *Compilation of the Replies to the Questionnaire on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Icon, And Typeface/Type Font Designs*, SCT/36/2 Rev., Annex I (Jan. 17, 2017).

中山信弘, 『著作権法』, 有斐閣(2007).

〈인터넷 자료〉

강서진·최성열, “폰트디자이너 생생인터뷰”, 모두매거진 2015. 10. 29., <<http://modumagazine.co.kr/archives/5235>>, (최종방문일 2018. 12. 7.).

김동식, “근대의 표상체계와 인쇄 테크놀로지”, 사이언스타임즈 2005. 5. 13., <<https://www.sciencetimes.co.kr/?news=근대의-표상체계와-인쇄-테크놀로지>>, (최종방문일 2019. 1. 2.).

- 박성훈·정유권, “폰트 제작 톨과 디자이너”, 타이포그래피 서울 2012. 8. 10., <<http://www.typographyseoul.com/news/detail/224>>, (최종방문일 2018. 12. 7.).
- 어도비코리아, “글꼴의 기능과 디자인에 적합한 글꼴 선택 방법”, <<https://blogs.adobe.com/creativedialogue/ko/design-ko/whats-in-a-fonts-can-define-your-design/>>, (최종방문일 2018. 1. 17.).
- 이연경, “한글 폰트 디자인의 세계”, 중앙일보 2015. 10. 4., <<https://news.joins.com/article/18788119>>, (최종방문일 2018. 12. 7.).
- Law Right, “Is copyright an appropriate protection for computer programs?”, <<https://www.law-right.com/is-copyright-an-appropriate-protection-for-computer-programs/>>, (최종방문일 2018. 12. 7.).
- WIPO, “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 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 - Signatories/Contracting parties”,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treaties/en/documents/other_treaties/vtf-parties.pdf>, (최종방문일 2018. 12. 7.).

